- 사회복지법인 ○○ 재단 -

법인·시설 운영실태 특정감사 결과

2016. 12.

DAEGU

대구광역시
DAEGU METROPOLITAN CITY

[감사관실]

- 사회복지법인 ○○재단-

법인·시설 운영실태 특정감사 결과

Ⅰ 감 사 개 요

- **감사기간 : 2016. 8. 8 ~ 8. 31**(13일간)
- **감사대상 : 시·구 감독부서, 법인·시설**
- **감 사 반 : 감사팀장 외 5명**
- **감사 중점사항**
  - ○ 법인 기본재산 매각 적법 여부
  - ○ 법인 및 시설 후원금, 보조금 관리 분야
  - ○ 시설 운영 및 관련부서 지도·감독 업무에 관한 사항 등

Ⅱ 감 사 결 과

- **총 지적건수 : 12건**
  - ○ 시정 7건, 주의 3건, 권고 2건
- **재정상조치 : 3건 19,558천원**
  - ○ 회수 2건 3,658천원, 여입 15,900천원
- **신분상조치 : 8명**(감독기관 : 훈계 2, 주의 4, 시설 : 경징계 2)

목 차

1. 촉탁의사 운영에 관한 사항[대구시, 동구] ····· 2

2. 지정후원금 관리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대구시] ····· 3

3.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처분에 관한 사항[대구시] ····· 5

4. 부식업체 선정 등에 관한 사항[동구] ····· 7

5. 2015년도 부식구입 부적정[동구] ····· 8

6. 사회복지시설 지도·감독 소홀[동구] ····· 9

7. 보조금 통장 통합사용 부적정[동구] ····· 11

8. 의료재활실 설치 및 기능보강사업 추진 부적정[동구] ····· 12

9. 근로자 퇴직적립금 관리·운영 부적정[동구] ····· 14

10. 보조금 지원 표지판 미설치[동구] ····· 16

11. 사회복지법인 감사 선임에 관한 사항[대구시] ····· 17

12. 사회복지법인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대구시] ····· 19

[일련번호 : 1]

대 구 광 역 시

권 고

제　　목　촉탁의사 운영에 관한 사항

관 계 기 관　대구광역시(동구)

내　　용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2조 [별표5]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별 사업 및 설치·운영 기준에 따라 촉탁의사는 시설당 1명 이상을 배치하여야 하며, 인건비는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보건복지부)」사회복지 생활시설 종사자 인건비(급여) 가이드 라인에 따라 국·시비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 촉탁의사와 △△△△△의 촉탁 계약내용을 보면 계약기간에 따라 주1회8시간(2010.6.1.~2013.11.14), 주1회(2013. 11.21~2014.6.30), 계약서 미작성(2014.7.8~2016.1.3.), 주1회2시간(2016.1.4~2016.8월 현재)등 근무시간에 대한 일정 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하고 운영하여 왔으며

○ △△△△△에서는 2011.1.1.~2016. 6월 현재까지 촉탁의사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하면서 주1회 근무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촉탁의사에게 미근무 기간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사회복지 생활시설 종사자 인건비(급여) 가이드라인(보건복지부)인건비 전액을 매월 지급하였다. (월 지급액 : 2,078~2,428천원)

○ 또한, 2011년~2016.5월 현재까지 촉탁의사들은 지급받은 인건비 146,221천원(매월 1,000천원~2,428천원) 중 105,975천원을 ○○재단의 후원금으로 기탁하였다.

조치할 사항　대구광역시 ◎◎◎◎◎과장, 동구청장은

○ 관련기관의 협조·건의를 거쳐 촉탁의사 근무기준을 정하는 등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촉탁의사 운용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

대 구 광 역 시

시 정

제　　목　지정후원금 관리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관 계 기 관　대구광역시

내　　용

○ 지정후원금 집행 현황

(단위:천원)

연도	지정후원금 분류	후원신청서내역		지출내역(직급보조비)	
		금액	용도	금액	비고
2013년	32,600	9,000	신청서없음	23,500	대표이사 시설장,팀장
		15,100	지정내용없음		
		8,500	기타		
2014년	86,391	10,000	신청서없음	22,300	대표이사 시설장,팀장
		3,000	재단운영경비 직급보조비		
		10,800	직급보조비		
		30,000	공동모금회 난방비지원	30,000	난방비지원
		30,000	재단차입금 납부	29,000	대출금상환
2015년	32,352	28,852	신청서없음	23,258	대표이사 시설장,팀장
		3,500	재단에위임		
2016년	19,200	19,200	재단운영경비 직급보조비	15,900	대표이사 시설장,팀장

○ 「사회복지사업법」제45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는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아무런 대가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이나 그밖의 자산(이하 '후원금'이라 한다)의 수입·지출의 내용과 관리를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후원금은 후원자가 지정한 용도[1] 이외로는 사용할 수 없고, 후원자가 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후원금에 대해서는 '법인 운영비 및 시설 운영비로 사용하되 기관운영비, 직책보조비, 부채상환금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고 되어 있다.

○ ○○재단에서는 후원자가 사용용도를 지정하지 않거나 명확하게 용도를 지정하지 않으면

1) 인건비, 업무추진비(기관운영비, 직책보조비 등), 운영비, 시설비, 사업비, 부채상환금, 잡지출 등

비지정후원금으로 분류해야 하는데도, 지정후원금으로 분류한 후 비지정후원금으로는 집행할 수 없는 직급보조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 ◎◎◎◎◎과에서는 2015년 10월 법인 점검시에 후원금 장부 별도 미작성, 용도 미기재, 용도외 사용 등의 사실을 확인하고도 과태료부과, 후원금 여입, 행정처분 등 없이 '주의' 처분(2015.12월)하였으며

○○재단에서는 감사일 현재까지도 후원금 신청서에 '재단운영경비 및 직급보조비'등으로 용도를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는 등 후원금 관리·집행을 부적정하게 하고 있다.

조치할 사항 ◎◎◎◎◎과장은

○ 2016.1 ~ 8월 직급보조비로 집행한 15,900천원을 후원금 계좌로 여입하도록 조치하시고 후원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 후원금이 생활인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3]

대 구 광 역 시

주 의

제　　목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처분에 관한 사항

관 계 기 관　대구광역시

내　　용

○ 기본재산 처분현황

(단위 : 천원)

소 재 지	지목	면적(㎡)	평가액	공시지가	매매가격
경북 ○○시 □□면 △△리	계	54,123	778,740	126,735	2,300,000
	대지	552	22,080	13,303	
	전	767	27,612	13,192	
	전	936	31,824	16,099	
	목장용지	36,000	324,000	61,920	
	임야	3,570	4,284	3,152	
	임야	7,298	218,940	12,114	
	목장용지	5,000	150,000	6,950	

1. 기본재산 처분 허가 부적정

○「사회복지사업법」제23조에는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계약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법률」,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법률」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고, 지방자치단체 수입의 원인이 되는 입찰에서는 최고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라고 되어 있다.

○ ○○재단에서는 입찰 등의 조치 없이 매각대상자(□□)와 매각금액(23억원)을 확정하여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을 하였으며

○ ◎◎◎◎◎과에서는 법인에서 기본재산 처분을 특정 대상자와 수의계약으로 추진하겠다고 신청하였으나 '입찰 등 회계절차 준수' 등 별도의 조치없이 ○○재단에서 신청한 내용대로 2014.3.19 기본재산 처분을 허가하였다.

2. 후원금 모금・집행 관련 조치 부적정

○「사회복지사업법」제45조에는 '후원금이란 아무런 대가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자산'으로 정의하고 있다.

○ ○○재단에서는 2013년 12월 20일 법인토지 매각금액 최종협의를 하면서 후원금 50백만원을 받기로 합의하였고, 2014년 5월 19일 ㈜□□와 맺은 부동산 매매계약서 제9조에서 115백만원을 후원하기로 명기하였으며

2014. 11. 20 토지 매도후 2014. 12. 5일 ○○○으로(2015.3.10.매수)부터 115백만원의 후원금을 수령하여 32백만원은 지정후원금, 나머지는 비지정후원금(신청서 없음)으로 받아 법인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 ◎◎◎◎◎과에서는 ○○재단에서 기본재산 처분 신청시 첨부한 이사회회의록에 '매도시 현금 50백만원을 후원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데도, '토지 매도와 관련한 후원금이므로 기본재산에 포함 검토' 등 조치없이 허가처분을 하였다.

조치할 사항 ◎◎◎◎◎과장은

○ 앞으로 법인 기본재산 매각시에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4]

대 구 광 역 시

주 의 요 구

제　　목　2015년도 △△△△△·□□□□□ 부식업체 선정 등에 관한 사항

관 계 기 관　대구광역시 동구

내　　용

○ 사회복지법인 ○○재단 △△△△△·□□□□□에서는 2015년도 부식업체를 선정하면서 연간 품목별 구입량 및 가격을 시장조사(견적 등)를 통해 산출하여 예정가격을 산정하지 아니하고 당해연도 입소자 생계비 전액을 예정가격으로 표시하고 188개 식자재 품목에 대한 단가표를 제출하도록 2014. 12. 4. ○○재단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여

○ 자체 부식업체 선정위원회를 9명 구성(원장 등 내부7명, 이용장애인대표 2명), 1차로 각 위원별 1,2 순위 업체를 추천하고 2차로 다수로 추천된 2개업체 중 재추천하는 방식으로 하여 단가표를 제출한 5개업체 중 가장 높은 188개 품목 단가표를 제출한 ㈜ ○○○○과 2014.12.29. 부식 납품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 2016년도 부식업체 선정에 있어서도 2015년도 식자재 공급계약서에 기재된 “어느 일방이 계약해지 의사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본 계약을 1년 단위로 자동 연장한다”는 계약 내용에 따라 부식업체 계약담당자가 구두로 영양사 등 자체 부식업체 선정위원회 위원 6명(원장 등 내부5명, 이용장애인대표 1명)의 의견을 들은 후 별다른 절차없이 2015. 12. 31일 ㈜ ○○○○과 납품계약을 1년 연장(2016.1.1.～2016.12.31.) 하였다.

○ 또한, 부식 납품업체로부터 2011~2016.8월 사이 총 17회 39,100천원의 후원금을 받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은

○ 앞으로 부식업체 선정시 관련 회계규정을 준수하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5]

대 구 광 역 시

권 고

제　　목　2015년도 △△△△△·□□□□□ 부식 구입 부적정

관 계 기 관　대구광역시 동구

내　　용

○ 부식구입 현황

업 체 명	구 입 액 (원)			계 약 일	비 고
	계	△△△△△	□□□□□		
(주)○○○○	375,753,090	89,628,320	286,124,770	2014.12.29	계약연장 '16.1.1.~12.31

[확인내용]

○ 사회복지법인 ○○재단「예산회계 규정」에 회계처리 및 절차에 관하여는「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따르고 동 재무·회계규칙에 계약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을 준용하여 처리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추정가격(부가세 제외)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구매계약의 경우 공개경쟁입찰을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정보처리장치(G2B)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를 병행할 수 있다.

○ 그런데, 사회복지법인 ○○재단 △△△△△·□□□□□에서는 2015년도 시설 입소자 부식을 구입하면서 2014.12.29일 부식 납품계약을 체결한 ㈜○○○○의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청구하여 총 375백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은

○ 사회복지 시설의 부식구입시 공개경쟁 입찰 방안을 도입하는 등 구입 절차가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6]

대 구 광 역 시

시 정 요 구

제　　목　사회복지 시설 지도·감독 소홀

관 계 기 관　대구광역시 동구

내　　용

1. 시설운영위원회 운영 부적정

○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24조, 「2016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에는 시설의 장은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민주·투명성 제고 및 생활자 권익 향상 등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하고 생활자 수가 20인 이상 시설에는 1개소 당 1개 운영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법 제36조 제2항 각 호[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각 호 중 같은 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2명을 초과해선 아니 된다.'고 되어 있으며, 위원회의 회의는 시설 생활자, 시설종사자 등에게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매년 1회 회의의 결과를 간략하게 요약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자체장은 '생활자 수가 100인 이상의 대형시설, 정신요양시설, 장애인시설 등에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때 인권보호 강화 등의 측면에서 반드시 관계 공무원을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참여시키도록 시설장에게 권고' 하라고 되어 있다.

○ ○○재단(□□□□□과 △△△△△)에서는 2013 ~ 2014년에는 두 시설의 운영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하였고 그 결과, 종사자 대표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운영위원 8~10 중 2~3명을 종사자 대표로 구성)

2015년부터는 두 시설의 운영위원회를 분리하였으나 △△△△원에서는 회의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관계 공무원을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요구 하지 않았다.

○ 동구 ◍◍◍◍◍과에서는 감사일 현재까지 운영위원 구성에 대한 현황을 모르고 있고(명부 부존재), 시설에서 요청한 운영위원을 위촉하지도 않았으며, 담당자(○○○, □□□)는 2013년부터 현재까지 운영위원회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다(분기별 1회 개최)

---

2) 시설의 장, 거주자(보호자)대표, 종사자 대표,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후원자·지역주민 대표, 공익단체 추천 등

2.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 이행 소홀

권고기관	권고사항	이행결과	인권위 결과통보
검찰청	·시설거주인 사망사건 수사의뢰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2016.4.25
동구청	·관할 시설 거주인의 사망·상해사건 처리 ·시설 거주인의 정신의료기관 입원의 적절성	현황, 적절성 여부에 대한 검토 및 조치결과 없음	점검계획통보 (2016.4.26) 이행결과 미통보
법인 및 시설	·피 진정인에 대한 징계조치 ·안전사고 재발방지 대책수립 등	·징계요청 ·매뉴얼재정리	2016. 4.

○「사회복지사업법」제51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자의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회복지법인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2016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에는 시·군·구청장은 시설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지도감독, 필요시에는 수시 지도점검을 하며, 주무관청이 지도감독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진정, 투서, 언론보도, 비리발생, 인권침해 등) 감사 및 지도감독을 실시한다.' 고 되어 있다.

○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서는 사회복지법인 ○○재단의 장애인거주시설 □□□□□, △△△△△의 장애인 보호조치 소홀 등 인권침해와 관련하여 조사결과를 발표하고,('16.1.25) 검찰총장에게는 수사를 의뢰하고 ○○재단과 동구청에는 상기(표)와 같이 권고하면서 3개월 이내에 이행결과를 통지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 동구 ◍◍◍◍◍과에서는 인권위에서 이행결과를 요청한 기한(3개월경과, 2016.4.26)에 이행결과가 아닌 이행계획을 제출[3]하였고, 상반기 장애인 복지시설 지도·점검 결과 보고서[4]에는 관내 거주시설의 사망·상해사건, 정신의료기관 입원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점검·판단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은 등(정신의료기관 입원자 및 개개인의 입원에 대한 적정성 판단 결과 등) 인권위원회 권고사항 이행을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은

○ 사회복지 업무 담당자가 시설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도록 조치하시고, 생활인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3) 장애인 거주시설 생활인 인권관련 지도·점검(2016.5.16.~5.31)
4) 복지정책과에서는 2016년 상반기 지도·점검 기간중 인권위 권고사항을 점검하였다는 주장임

[일련번호 : 7]

대 구 광 역 시

시 정 요 구

제　　목　보조금 통장 통합사용 부적정

관 계 기 관　대구광역시 동구

내　　용

○ △△△△△ 인건비 · 운영비 · 생계비 현황

(금액단위 : 천원)

성 명	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5월
계	7,286,362	1,075,945	1,230,798	1,324,702	1,377,546	1,524,704	752,667
인건비	6,331,442	926,074	1,080,084	1,159,045	1,191,640	1,327,563	647,036
운영비	489,527	81,663	82,085	84,429	89,744	95,918	55,688
생계비	465,393	68,208	68,629	81,228	96,162	101,223	49,943

○ □□□□□ 인건비 · 운영비 · 생계비 현황

(금액단위 : 천원)

성 명	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5월
계	15,934,424	2,633,615	2,740,828	2,903,932	3,067,483	3,278,050	1,310,516
인건비	12,839,341	2,115,285	2,214,495	2,331,133	2,442,148	2,657,998	1,078,282
운영비	1,289,978	235,122	235,866	236,735	243,142	247,738	91,375
생계비	1,805,105	283,208	290,467	336,064	382,193	372,314	140,859

○ 「지방보조금 관리규정」에 민간에 대한 지방보조금 통장은 자부담을 포함한 보조금만 관리할 수 있도록 1개 사업에 1개의 통장(계좌)을 별도 개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 및 □□□□□에서는 상기 현황과 같이 2011년~2016. 5월 현재까지 관리운영비(인건비, 운영비)와 생계비를 분리하지 아니하고 통합하여 관리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은

○ 관리운영비와 생계비를 분리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고, 보조금 집행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8]

대 구 광 역 시

주 의 요 구

제　　목　의료재활실 설치 및 노후시설 개보수 기능보강사업 추진 부적정

관 계 기 관　대구광역시 동구

내　　용

○ 보조금 집행현황

(단위: 천 원)

구분		계약금액	계약일자	착공일	준공일	집행액	계약자	비고
계		189,750				187,690		
설계		13,530	2014.4.14	-	-	13,530	건축사사무소 ○○	
감리		2,805	2014.4.14	2014.4.30.	2014.6.30.	2,805	건축사사무소 ○○	
공사	건축	130,217	2014.4.30	2014.4.30.	2014.6.30.	128,157	㈜□□	
	추가	20,779	2014.6.1	2014.6.1.	2014.6.30.	20,779	㈜□□	
	전기	17,787	2014.4.30	2014.5.2.	2014.6.30.	17,787	㈜△△	
	통신	3,223	2014.4.30	2014.5.2.	2014.6.30.	3,223	○○㈜	
	소방	1,408	2014.4.30	2014.5.2.	2014.6.30.	1,408	◇◇소방	

1. 설계용역 추진 부적정

○「지방계약법」제14조에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동법 제16조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서 등 관계서류에 따라 감독하고 감독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동법 제17조 및 제18조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서류에 따라 검사하여야 하고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다.

○ △△△△△에서는 의료재활시설 설치 및 노후시설 개보수 설계용역을 계약하면서 계약기간 및 구체적인 과업범위(납품도서 목록, 도서작성기준 등) 없이 계약하고(2014.4.14), 용역완료에 대한 감독조서 및 검사조서 없이 계약과 동시에(2014.4.14)지출하였으며, 계약상대자의 설계비 청구서는 2014.4.15. 접수하는 등 기능보강사업 설계용역을 부적정하게 추진하였다.

2. 예정가격 작성 부적정

○ 행정자치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2장 5절에는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2개 업체 이상의 자료를 근거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 △△△△△에서는 공사 예정가격의 기초근거인 설계내역서상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견적서 등 근거없이 산정하여 입찰 공고하였다.

3. 기능보강 사업비 낙찰차액 활용 부적정

○ 보건복지부 '2014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에는 '입찰결과에 따라 차액이 발생한 경우 반납을 원칙으로 하되, 사전승인을 받아(시·도지사) 동일한 시설의 다른 기능보강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지방계약법」제22조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 등 재정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이하 '설계변경'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고 되어 있다.

○ △△△△△에서는 ㈜□□ 등 4개업체와 2014.4.30. 의료재활시설 설치 및 노후시설 개보수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낙찰차액(20,779,330원)에 대하여는 사전승인 없이 동일한 시설의 사업자인 ㈜□□와 추가공사를 낙찰차액 만큼의 금액으로 견적서를 받아 수의계약하였으며,「지방계약법」에 따라 신규비목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데도 ㈜□□에서 제출한 견적으로 별도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은

○ 앞으로 시설의 기능보강 사업비가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보조금 집행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9]

대 구 광 역 시

시 정 요 구

제　　목　근로자 퇴직적립금 관리・운영 부적정

관 계 기 관　대구광역시 동구

내　　용

○ 1년 미만 근로자의 퇴직적립금 미반납 내역

(단위 : 원)

시설명	성명	직급	근무기간	퇴직연금 적립금 내역			비고
				보조금	자부담	반납금	
□□□□□	○○○	생활 지도원	2014.1.20. ~2015.1.10	2,138,423	0	2,138,423	미반납

○ 퇴직적립금 관리 현황

(단위 : 천원)

시설명	구분	은행명	계좌번호	연도말 잔고					비고
				2011. 12.31	2012. 12.31	2013. 12.31	2014. 12.31	2015. 12.31	
□□ □□ □	퇴직연금(확정기여형)	대구	————————	-	-	103,977	161,989	223,049	퇴직연금
	퇴직연금용 입출금	대구	————————	8	8	766	0	0	
	퇴직연금(확정기여형)	국민	————————	262,646	396,370	420,627	447,909	535828	퇴직연금
	퇴직연금용 입출금	국민	————————	1,894	1,384	1,385	0	0	
△ △ △ △ △	퇴직연금(확정기여형)	대구	————————	-	-	111,415	115,625	158,911	퇴직연금
	퇴직연금용 입출금	대구	————————	0	0	0	0	0	
	퇴직연금(확정기여형)	국민	————————	104,280	174,798	144,383	168,095	214,892	퇴직연금
	퇴직연금용 입출금	국민	————————	2,323	0	0	0	176	
	퇴직금(연금 변경 전)	**대구**	————————	**1,513**	**1,514**	**1,516**	**1,517**	**1,519**	**미반납**

○ 「근로기준법」 제34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에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별도의 퇴직적립금을 관리・운영하여야 하고,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자가 퇴직한 경우 그 퇴직금 중 국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은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반환토록 규정 되어 있다.

○ 그런데도 □□□□□에서는 생활지도원 ○○○이 1년 미만(2014.1.20～2015.1.10) 근무하고 퇴직하였으나, 퇴직적립금 2,138,423원을 기한 내(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 반납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고

○ △△△△△에서는 퇴직연금(확정기여형)으로 변경 후에 사용하던 퇴직금 통장을 폐기하고 잔액 1,520,039원은 반납하여야 함에도 반납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은

○ 퇴직적립금 3,658천원은 반납조치 하시고, 1년미만 근무한 종사자가 퇴직할 경우 미반납 보조금이 없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0]

대 구 광 역 시

시 정 요 구

제　　목　보조금 지원 표지판 미설치

관 계 기 관　대구광역시 동구

내　　용

○「대구광역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제1조, 제8조 내지 제9조 및 동 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대구광역시의 보조금이 지원되거나 지원중인 시설이나 단체 등에 시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시설에 대한 공공 활용도를 높이고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고자 단위사업별로 연간 1천만원 이상 지원받는 법인 또는 단체에서는 사업명, 보조금액, 지원기간 등을 표시한 보조금지원 표지판을 시설의 내·외에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 및 □□□□□에서는 동 규정에 따른 보조금지원 표지판을 설치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은

○ 보조금 지원 표지판이 설치되도록 조치하시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1]

대 구 광 역 시

시 정

제　　목　사회복지법인 감사 선임에 관한 사항

관 계 기 관　대구광역시

내　　용

○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연도			감사
	2012	2013	2014	
계	4,705	4,721	7,532	○△△△(회계사) - ◇◇◇◇◇ 법무법인 소속 ○□□□(교수) -○○○○대학
○○재단	104	69	2,513 (기본재산포함)	
□□□□□	3,249	3,118	3,292	
△△△△△	1,352	1,534	1,727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7항,「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제10조에는 '감사 선임 당시 법인(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을 포함한다)의 직전 3회계연도의 세입결산서에 따른 세입의 평균이 30억원 이상인 법인은 감사중 1명을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3조1항에 따른 5)감사인에 속한 사람을 감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고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에는 '제18조 7항을 위반하여 선임된 사람은 법인에 그 임원의 해임을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공익법인의설립에관한법률」 제10조에는 '감사의 직무는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법인의 직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시도지사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다.

5)「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공인회계사법」 제4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한 감사반

○ ○○재단에서는 임기만료시[6](임기 2년) 감사 중 1명을 시장의 추천으로 회계법인에 속한 사람을 선임해야 하는데도, 이사회 결정으로 법무법인에 속한 △△△(2009.12.12 ~ 현재)을 연임 결정하였으며 감사결과 보고서는(2013~2015년) 지적사항이 한 건도 없었다.

○ ◎◎◎◎◎과에서는 임면보고서를 받고도 해임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법인(시설) 지도·감독시에도 감사보고서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과장은

○ 감사중 1명을 추천하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관한법률」제3조1항에 따른 [7]감사반에 속한 사람이 감사로 선임되도록 조치하시고, 향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

6) △△△(2013.11.14, 2015.11.14), ○○○(2013.12.11,2015.12.11)

7)「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공인회계사법」제4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한 감사반

[일련번호 : 12]

대 구 광 역 시

시 정

제　　목　사회복지법인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

관 계 기 관　대구광역시

내　　용

1. 이사회 개최 부적정

○「사회복지법인관리안내」에는 '이사의 현원이 7명 미만일 경우에는 이사회 개최가 불가하므로 임기만료이사나 임시이사를 통해 현원을 충족하여 개최'하라고 되어 있다.

○ ○○재단에서는 현원이 5명으로 이사회 개최가 불가한데도 2015. 7. 13 제6차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현안보고와 안건을 심의하였으며

◎◎◎◎◎과에서는 이사회 개최 승인신청시 관련서류를 통해 이사회 개최가 불가한 것을 알 수 있었는데도 '임기만료이사나 임시이사를 통해 현원을 충족하여 개최'하라고 안내하지 않고 이사회 개최를 승인하였다(2015.7.2)

2. 이사회 회의록 비공개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제10조의 3에는 '이사회의 회의록을 회의일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사회복지법인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관할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3개월간 공개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다.

○ ○○재단에서는 현재 홈페이지가 폐쇄되어 있으며(2016.4.20.), ◎◎◎◎◎과에서는 법인 자체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3. 이사회 의결 부적정

○ 대법원에서는 '사회복지법인의 이사회는 필요적 상설기관으로서 이사 자신들의 직접적인 토의와 결의를 요하고 의결권의 대리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 라고 판단하고 있다.

○ ○○재단에서는 2012. 12. 24 제4차 정기이사회에서 대표이사가 재적위원 6명 중 2명의 (○○○, □□□)위임을 받아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조치할 사항　◎◎◎◎◎과장은

○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조치하시고, 법인의 이사회에서 제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